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가단50030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이학윤, 이종언, 정형윤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식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변론 종결2021. 2. 18.

판결 선고2021. 4. 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5,472,035원 및 그중 145,460,069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과 같고, 피고 B에 대하여는,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9. 9. 9.자 매매계약을 145,472,035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9. 9. 접수 제8285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의뢰에 따라 2011. 7. 15. 보증원금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2. 7. 13.(그 후 연장됨)으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은 원고가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2억 원 한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A이 2019. 3. 15.자로 원금원체를 사유로 한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9. 6. 28. 연체된 대출원리금 145,749,3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⑥ 위 ③항과 ④항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제10조 제1항), 2019. 6. 28. 이후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연 10%이고, 회수금은 289,260원, 확정손해금은 11,966원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9. 9. 거래가액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828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약 371,531,000원{= 중소기업은행 본부총괄 83,186,000원 + 중소기업은행 마장동(지) 59,468,000원 + C 83,128,000원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 145,749,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D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위 가. 내지 다.항 사실에 대하여)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45,472,035원{= 대위변제금 잔액 145,460,069원(= 대위변제금 145,749,329원 - 회수금 289,260원) + 확정손해금 11,966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145,460,06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6. 28.부터 이 사건 2020. 9.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9. 16.까지는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발생해 있었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 여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바,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친인척관계 등이 있는지, 부동산등기부상의 기재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1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갑 6호증 그리고 을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명령에 따른 E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에 의하면, 피고 A은 F으로부터 의정부시 G건물, H호를 매수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자 2017. 2. 27.경 피고 B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잔금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피고 B이 기존 임차인 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반환채무를 승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 J에 대한 담보채무 500만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4,500만 원은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로 대체(상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잔금 1억 7,000만 원은 피고 B이 피고 A에게 자기앞수표(1,000만 원권 10매, 100만 원권 70매)로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J 명의의 가등기가 먼저 말소되었고, 위 가등기 외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가압류)등기나 근저당권등기 등이 전혀 없었던 사실, 의정부시 K 소재 L 아파트 내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전용면적의 아파트 일반평균가가 2019. 9. 경 2억 4,0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과 일치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피고들이 친인척 관계나 특수 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들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위 차용금 채무를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 B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영수

별지